

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1년 1월 7일
- 회부일자 : 2001년 1월 7일

3. 제안이유

-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(2001. 1. 29) 및 동법시행령(2001. 4. 30)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·징수절차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
- 광역교통시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광역교통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4. 주요골자

- 부담금의 부과율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·대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7.5로,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경우는 100분의 1로 함

-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
- 부담금의 부과·징수사무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고,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·군수에게 교부함
-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을 징수관·경리관은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으로, 분임징수관·분임경리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, 지출원은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함.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안을 검토한바,
-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시 광역교통시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의 부과·징수 절차를 정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